

2025

언론중재위원회 현안보고서 2





2

프랑스 언론윤리조정위원회의 현황과 최근 결정 사례

최인화 : 언론중재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원

- I. 프랑스 언론윤리조정위원회의 설립배경과 기능
- II. 프랑스 언론윤리조정위원회의 절차
- III. 2024년 언론윤리조정위원회 신청 및 의견현황
- IV. 2025년 프랑스 언론윤리조정위원회의 최근 결정례
- V. 시사점

I 프랑스 언론윤리조정위원회의 설립배경과 기능

프랑스의 언론윤리조정위원회(Conseil¹ de Déontologie² Journalistique et de Médiation³, CDJM)는 2019년 12월, 언론에 대한 불신 고조와 디지털 시대 허위정보 확산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언론윤리조정기구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설립되었다. 1916년 스웨덴 최초의 언론감시기관인 언론위원회(Press Council) 설립 이후 다수 유럽국가가 자율적 규제기구를 도입하고 있었고, 이에 영향을 받아 프랑스도 신문, 방송, 디지털 등 다양한 언론사와 언론인, 미디어 이용자 대표 등이 참여하여 합의의 결과로 언론윤리조정위원회의 설립이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에서는 ‘노란조끼’ 시위 등으로 사회적 갈등과 언론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면서, 시민과 언론인 모두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정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언론 자유와 독립성에 대한 우려,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언론 자유에 관한 법률(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을 통한 언론 피해 구제법과 정보윤리감시센터(ODI)에 대한 언론계의 기존 인식 등으로 합의가 쉽지 않았다. 특히 정부가 언론윤리기구 설립을 공식적으로 두 차례나 검토한 것에 대해 언론계는 언론 자유 침해 가능성을 강하게 경계하였고, 위원회의 재정 지원 주체 문제 및 언론인단체의 반대도 지속되었다. 이러한 논의가 장기간 답보상태인 가운데, 정부의 설립 의지 표명과 정보윤리감시센터(ODI)의 경험을 계승한 자율규제형 언론윤리조정기구가 2019년 12월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최지선, 2022).

프랑스 언론윤리조정위원회 내규(Règlement intérieur)⁴ 제1조는 조정대상 매체에 대해 프랑스에서 발행·방송·게재되는 편집 책임이 있는 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TV 방송, 뉴스사이트, 디지털 미디어 등 모든 ‘저널리즘 행위(acte journalistique)’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언론윤리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매체는 프랑스에서 발행되는 전통적 신문 및 잡지, 방송, 온라인 언론(뉴

1 ‘Conseil’은 위원회, 심의회, 자문기구 등을 의미하나, 프랑스 제도의 독립성과 자율규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고서에서는 ‘위원회’로 번역하였다. 위원회 정관(Statuts) 전문(Préambule) 이하에 따르면, 위원회를 ‘협회(Association)’로 표기하기도 하였다(CDJM, 2024b). (<https://cdjm.org/statuts/> 참조)

2 최지선(2022)은 ‘Déontologie’을 ‘저널리즘 윤리’로, ‘Médiation’은 ‘중재’로 번역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Déontologie’을 ‘언론윤리’로 번역하였다.

3 프랑스법에서 ‘médiation’과 ‘conciliation’은 모두 중립적인 제3자가 당사자들이 분쟁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제도이다. ‘médiation’은 당사자가 합의로 선임하는 제3자가 절차를 진행하는 반면, ‘conciliation’은 법원 또는 법원이 임명하고 감독하는 제3자(자연인)가 절차를 진행하며, 판사(le juge)의 임무가 제3자에게 위임된 것이다. ‘conciliation’은 ‘사법조정’으로, ‘médiation’은 ‘민간조정’으로 번역하였다(박현정, 2020). ‘médiation’을 ‘중개’로 번역하면서, ‘중개’는 분쟁 당사자들에게 해결안을 강요할 수 있는 사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중재(arbitration)와는 다르다고 본 자료도 있다(한국법제연구원, 2006).

본 보고서에서는 프랑스의 ‘Conseil de Déontologie Journalistique et de Médiation’가 법원 또는 법원이 임명한 제3자가 절차를 진행하는 기관은 아니며 자율규제형 기구이므로 ‘médiation’을 ‘조정’으로 번역하고 ‘Conseil de Déontologie Journalistique et de Médiation’은 ‘언론윤리조정위원회’로 번역하기로 한다.

4 프랑스 언론윤리조정위원회 내규(Règlement Intérieur)는 CDJM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cdjm.org/reglement-interieur/> 참조).

스사이트, 디지털 미디어) 등 대부분의 저널리즘 매체를 포괄한다. 유럽 언론 평의회(European Press Councils)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프랑스 언론윤리조정위원회가 전통적 매체(신문, 방송)뿐 아니라 온라인 언론, 뉴스 에이전시 등 광범위한 미디어 및 언론인, 언론단체를 포괄하는 윤리조정기구라고 안내하고 있다(Presscouncils.eu, n.d.).

프랑스의 언론윤리조정위원회는 전국적 자율규제 기구로서 언론인, 언론사, 시민 대표가 균형 있게 참여한다. 국가나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언론과 대중 사이에서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언론 종사자와 시민 대상 윤리 교육 및 소통 증진에도 힘쓴다. 이 위원회는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아닌 삼자 구조의 자율 규제기구로, 편집권은 편집 책임자와 편집진의 고유 권한으로 존중되며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행사된다. 위원회는 합당한 신청 사건에 대해 양측 의견을 청취하고 저널리즘 윤리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심의하되, 형사적·재정적·행정적 제재 권한은 행사하지 않는다. 심의 결과는 공식 의견서(avis) 형식으로 위원회 및 해당 언론사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궁극적으로 위원회는 전문 저널리즘 정보를 일반 정보와 정치·이익집단의 홍보물과 명확히 구분하여, 언론 신뢰성과 전문성, 정보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프랑스 언론윤리조정위원회는 2019년 설립 이후 언론과 미디어 이용자 간의 윤리적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위원회의 절차와 현황, 그리고 2025년 실제 결정례를 중심으로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상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II 프랑스 언론윤리조정위원회의 절차

프랑스 언론윤리조정위원회(CDJM)의 절차는 위원회 내규(Règlement intérieur)에 따라 운영된다. 절차는 신청, 접수 심사, 조정, 심의 및 의견 공개, 재심의 순서로 진행되며, 각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언론윤리조정위원회 내규 제1조(신청(Saisine))와 제2조(신청방식(Mode de saisine))에서는 신청권자, 신청 대상, 신청기한 및 신청방식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1) 신청권자, 신청대상 및 신청기한

언론윤리조정위원회에 대한 신청은 만 16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이 해당 기사 또는 방송의 공개, 발행, 게재일로부터 최대 3개월 내에 저널리즘 행위(acte journalistique)에 대해 조정 또는 윤리적 의견(avis déontologique)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프랑스 내에서 편집, 발행, 방송되거나 프랑스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저널리즘 행위로 한정되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단, 매체(média)의 전체 보도물, 편집방침(ligne éditoriale d'un média) 또는 편집진의 편집상 선택(choix rédactionnels)에 관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익명이나 변호사 대리를 통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제1조 제5항, 제2조 제6항).

(2) 신청방식

신청은 원칙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며, 예외적으로 우편 제출도 가능하다(제2조 제1항). 신청인은 성명, 주소, 전화번호, 가능하다면 이메일 주소와 함께 문제된 매체명, 기사·방송의 날짜와 필요 시 시간, 출판 정보, 기사 제목 또는 프로그램명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언론윤리조정위원회 웹사이트에 제시된 목록에서 신청 사유를 선택하고, 언론윤리 위반의 구체적·상세한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만약 해당 매체에 사전 연락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매체의 답변을 기재해야 하며, 문제된 기사나 방송 전체의 복사본 또는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제2조 제2항).

신청서는 공백을 포함해 5,000자 이내로 작성되어야 하며, 신청이유(grief)에는 반드시 기사·방송의 특정 부분과 언론윤리 규정 위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요건이 부족하거나 누락된 신청은 15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받으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으면 '접수 불가(irrecevable)'로 처리된다(제2조 제5항). 또한 절차 남용적이거나 모욕적 성격의 신청은 무효로 간주되고(제2조 제6항), 윤리적 쟁점이 불분명하거나 단순 논쟁(특히 과학적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 역시 접수되지 않는다(제2조 제7항). 해당 매체가 언론윤리조정위원회의 '정정보도 권고'에 따라 오류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정정한 경우, 사무국은 문제제기가 더 이상 실질적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제2조 제8항). 신청비용은 원칙적으로 무료이나, 개인의 경우 12개월 내 3번째 신청부터 건당 50유로, 법인의 경우 250유로의 심사비가 부과되며, 미납 시 신청은 접수되지 않는다(제2조 제9항, 제10항).

2. 접수 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언론윤리조정위원회 사무국은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 확인서(accusé de réception)를 송부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제3조 제1항). 언론윤리조정위원회 사무국 직원은 접수된 신청이 위원회 관할과 내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며, 판단이 불명확할 경우 이사회에 상정한다. 이사회 위원의 구성은 언론인(기자 등) 대표, 언론사(편집자, 발행인 등) 대표, 시민(시민단체, 이용자 등) 대표 등 3개의 그룹에서 각각 10인씩 선거로 선출되어 총 30인으로 구성되며 각 그룹별로 10인의 예비위원을 둔다.⁵

위원회 이사회는 제1조·제2조 및 신청기준표⁶를 근거로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회의에서 실무조사그룹(groupe de travail)을 지정한다. 모든 신청은 이사회에 보고되며, 사무국은 매 회의마다 불수리(rejet de saisine) 결정 내역을 보고한다(제3조 제2항).

사무국이나 이사회가 신청이 접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관련 매체에도 불수리·종결 사실을 알리되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명백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은 당사자에게 직접 통지되며, 교육적 목적을 위해 익명 요약본 형태로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다(제3조 제3항). 신청이 형식적으로 요건을 충족했다라도 명백한 근거가 없거나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위원장이 신청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며, 언론사와 이사회에도 같은 사실이 전달된다. 다만 모든 신청이 반드시 공식 의견서(avis) 발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공식적 필요

5 프랑스 언론윤리조정위원회 정관 제11조 제8항

6 신청기준표는 본 보고서 끝부분에 첨부하였다.

(intérêt pour le public)가 있을 경우에만 의견서로 공개될 수 있다(제3조 제4항). 아울러 동일한 저널리즘 행위에 관한 복수의 신청은 통합하여 하나의 의견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청은 별도의 불수리 절차에 따라 배제된다(제3조 제5항).

3. 조정

사무국은 신청 사안이 조정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 간 직접 연결을 제안할 수 있으며, 양측의 동의를 있을 경우 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조정은 위원회 내 지정된 담당자가 맡고, 진행 사실은 이사회에 보고된다(제4조 제1항). 조정의 개시 여부와 결과(예: ‘조정 성립(médiation aboutie)’, ‘조정 미성립(médiation non aboutie)’)은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되지만, 절차 과정과 합의 내용은 비밀로 유지된다(제4조 제2항). 필요시 위원회는 별도의 조정 현장을 제정할 수 있다(제4조 제3항).

4. 신청 처리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해당 매체와 필요할 경우 기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신청 사유와 신청인 정보를 전달한다. 매체는 15일 내에 서면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제5조 제1항). 이후 이사회가 지정한 실무조사그룹(기자·언론사·시민대표 각 1인 이상 참여)⁷이 조사를 진행하며(제5조 제2항), 간단한 사건은 사무국 직원이 대신 분석할 수 있다(제5조 제3항). 실무조사그룹은 당사자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제5조 제4항). 매체 또는 기자의 공식 답변은 신청인에게 전달될 수 있으며, 신청인은 8일 내 추가 의견을 낼 수 있다. 언론사는 취재원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답변의 일부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인의 의견 역시 매체나 기자에게 전달되어, 신청인도 8일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제5조 제5항).

조사가 종료되면 실무조사그룹은 당사자의 주장과 근거를 요약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는 이를 토대로 심의 후 공식 의견서(avis)를 채택한다. 접수된 모든 신청은 반드시 의견서 형태로 결론이 나온다(제5조 제6항). 다만 심사 중인 신청은 공익적 필요로 공개하기로 결정되지 않는 이상 비공개 상태로 유지된다(제5조 제7항). 또한 이사회 구성원이 개인적·직업적 이해관계로 인해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해당 사건의 조사나 심의 결정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직무 회피 사실은 최종 의견서에 명시된다(제5조 제8항).

5. 심의, 의견공개 및 재심

(1) 언론윤리조정위원회의 심의

위원회 이사회는 실무조사그룹 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의하며, 저널리즘 행위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외부 사실은 기자의 취재 동기 등 이해에 필요한 경우에만 고려한다(제6조 제1항). 필요시 추가 자

⁷ 프랑스 언론윤리조정위원회 정관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자체적으로 여러 위원회 또는 실무그룹을 구성할 수 있다. 실무그룹의 구성원이 반드시 이사회 위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외부 전문가, 언론윤리조정위원회 회원 등 다양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로 수집이나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의견서는 만장일치(consensus)로 도출하되, 만장일치가 불가능하거나 이사회에 요청이 있을 경우, 표결로 결정하며, 이 때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되고,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의견서에는 ‘인용(fondée)’, ‘기각(non fondée)’, ‘부분 인용(partiellement fondée)’ 여부를 명시하고, 경우에 따라 윤리적으로 타당하더라도 근거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제6조 제3항). 공식 의견서는 사무국 직원이 작성하며, 사실관계와 당사자 입장, 적용 윤리규정⁸, 심의 과정, 결론의 형식을 취한다(제6조 제4항). 의견서에는 결정 방식, 참여 위원, 직무 회피 사례가 포함되며, 요청 시 소수의견도 실명 공개할 수 있다(제6조 제5항).

(2) 의견 공개

공식 의견서는 독립성·투명성·공정성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당사자에게 사전에 안내되지만 신청인은 공개에 반대할 수 없다(제7조 제1항). 의견서는 언론사에 이메일, 공식문서, 위원회 홈페이지 공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보된다. 위원회는 해당 언론사가 직접 대중에게 알릴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당사자 이름은 공개되지만, 신청인의 신변안전·지위·개인정보 보호 필요가 있을 경우 비공개가 가능하다(제7조 제2항~제4항).

(3) 재심

공식 의견은 원칙적으로 재심 대상이 아니나, 제소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나 자료가 제출되면 사무국이 재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재심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실무조사그룹이 구성되어 추가 조사와 심의를 진행한다(제8조).

6. 기타

이사회는 언론윤리 일반에 관한 권고문이나 안내문서를 작성·발표할 수 있으며, 외부 기관이 특정 저널리즘 행위의 윤리 준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면, 필요성과 적절성을 독립적으로 판단해 답변 여부를 결정한다. 답변하기로 결정된 경우, 의견서는 내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채택된다(제9조).

언론윤리조정위원회는 매년 연간 활동보고서를 사무국에서 작성하며, 이사회와 총회 승인을 거쳐 공식적으로 공표한다. 연간보고서에는 위원회의 전체 활동 내역, 접수된 신청 및 채택된 의견서, 권고 등 발행 문서의 현황이 포함되며,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된다(제10조).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매월 1회 개최되며, 필요시 구성원의 1/3 이상 요청으로 추가 소집이 가능하다. 회의는 정회원·예비회원 모두에게 최소 3일 전에 통지된다. 모든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합의로 이루어지지만, 필요시 표결이 실시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제11조). 회원 회비는 이사회에서 1년 단위로 책정되며, 해당 연도의 9월 1일 이후 가입자는 6개월분 회비만 납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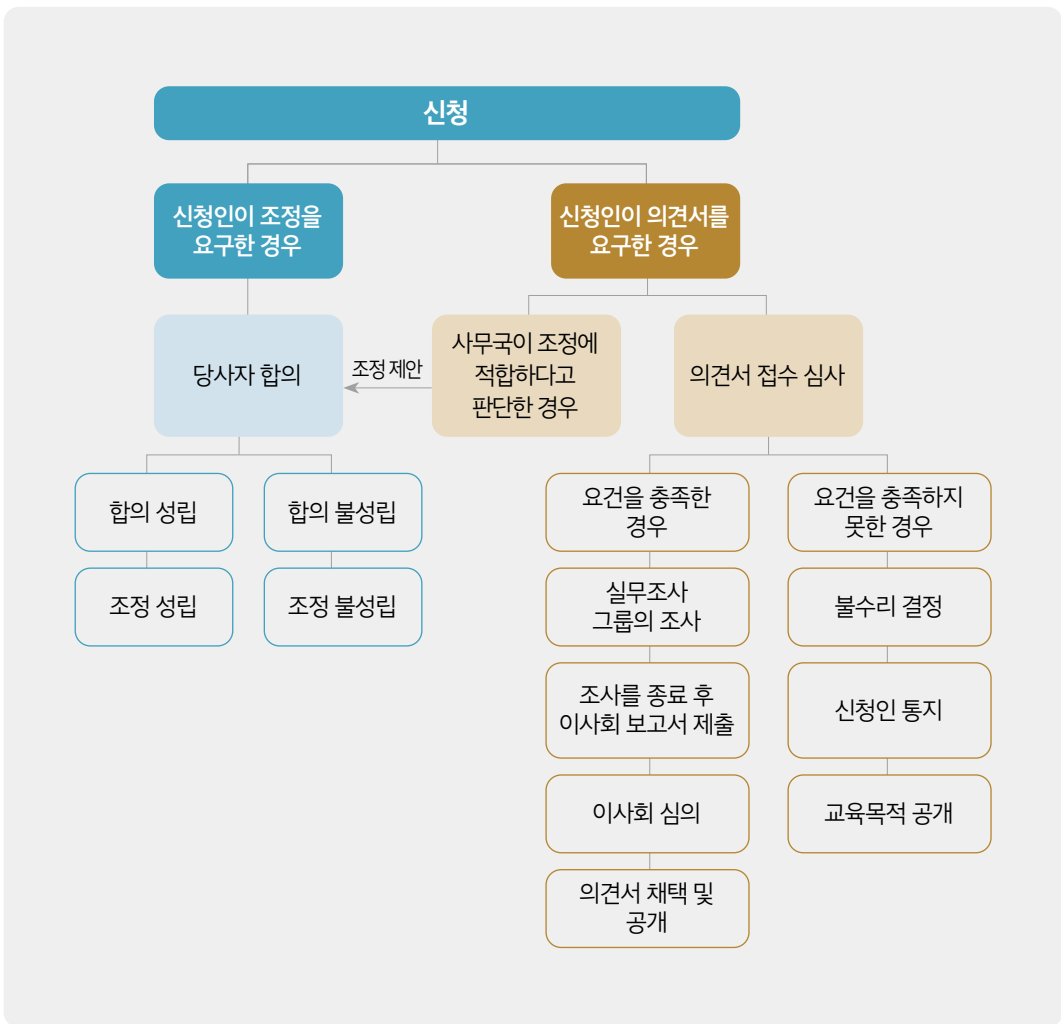
8 프랑스 언론윤리조정위원회에서 참조하는 적용 윤리규정은 1918년 제정되고 1938년과 2011년 개정된 프랑스 언론인 직업 윤리헌장(Charte d'éthique professionnelle des journalistes français(1918-1938-2011)), 언론인의 권리와 의무를 선언한 1971년 뮌헨 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et devoirs des journalistes (Munich, 1971)), 2019년 국제언론인 연맹에서 채택한 세계언론인 헌장(Charte d'éthique mondiale des journalistes (2019))이다.

최초 사업연도에 납부한 회비는 그 해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납부된 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제12조).

7. 소결

프랑스 언론윤리조정위원회 내규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은 해당 기사나 방송이 공개, 발행, 게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저널리즘 행위에 대해 위원회에 조정 또는 윤리적 의견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조정 절차와 의견서 요청 절차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아래는 각각의 절차를 순서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그림 1 프랑스 언론윤리조정위원회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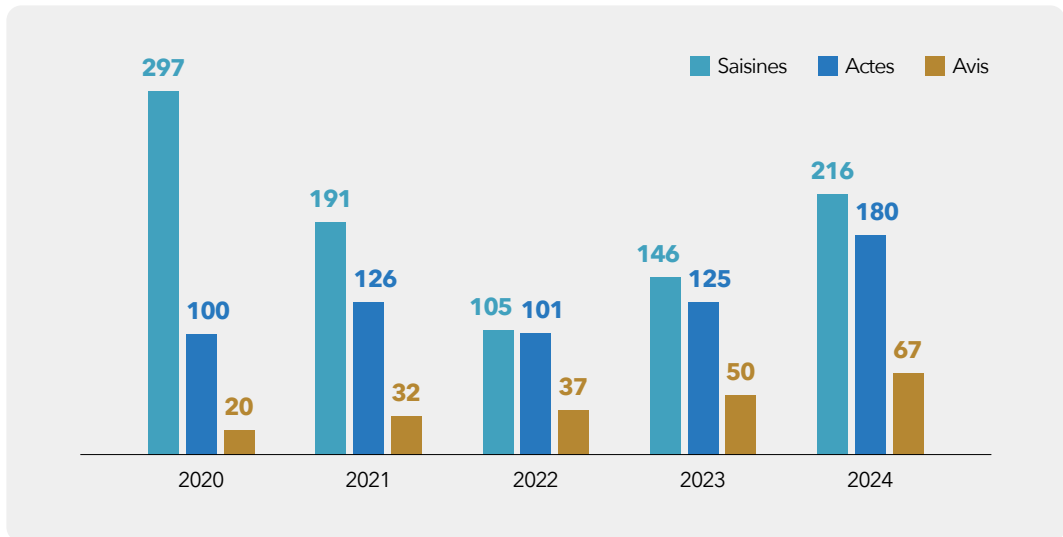
Ⅲ 2024년 언론윤리조정위원회 신청 및 의견현황

2024년 프랑스 언론윤리조정위원회(CDJM)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연도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라는 언론윤리 가치가 민주주의 실현에 필수적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해였다. 사회 양극화와 허위정보, 다양한 정보 조작이 만연한 상황에서 언론윤리의 보호와 강화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2019년 설립 이후 프랑스 언론윤리조정위원회는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 옹호와 함께, 윤리 기준 위반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는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대형 언론사의 회원 미가입과 그에 따른 재정적 취약성이라는 두 가지 구조적 과제가 위원회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위원회는 신규 자원 확보와 회원 대상 서비스 개발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CDJM, 2025b).

1. 신청 및 처리 현황

2024년 프랑스 언론윤리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Saisines) 건수는 216건으로,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해 2023년의 146건을 크게 상회한다. 이 중 처리된 사건(Actes)은 180건이며, 공식 의견서(Avis)는 67건 발행되었다.

그림 2 최근 5년간(2020~2024) 신청 및 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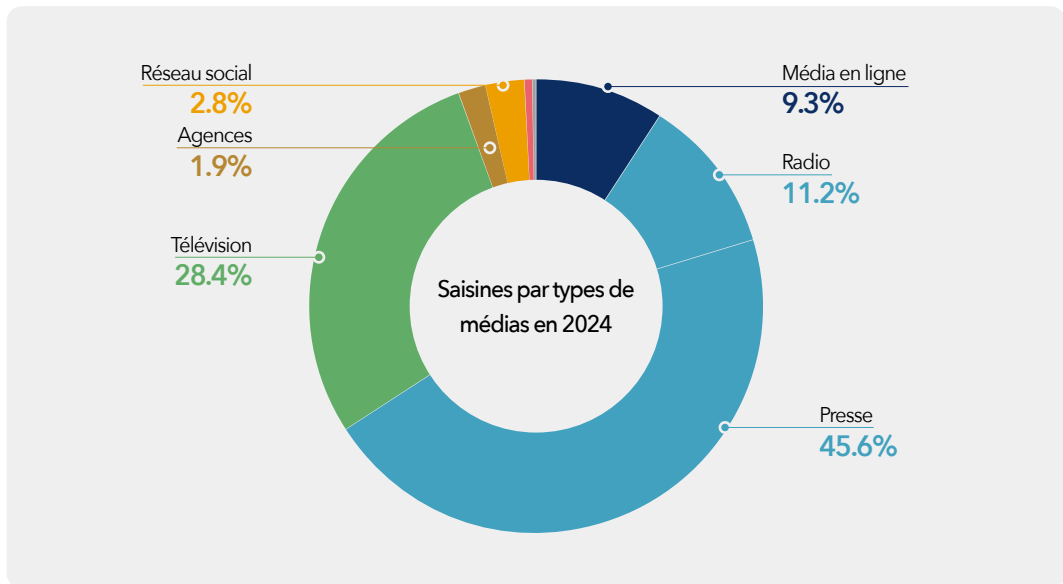
최근 5년간 공식 의견서 발행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20건, 2021년 32건, 2022년 37건, 2023년 50건, 2024년 67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전체적으로 신청 대비 실질적 심의·처리 및 공식 의견 발행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4년 프랑스 언론윤리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 가운데 절반 이상은 ‘정확성(exactitude)’과 ‘진실성(véracité)’ 결여를 문제삼는 내용이었다. ‘반론 기회 미제공(absence d’offre de réplique)’ 사유는 연간 약 20건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국제 지정학적 이슈, 특히 중동 지역 분쟁 관련 보도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침해(atteinte à la dignité des personnes)’를 이유로 한 신청이 전년 대비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오류 미정정(non rectification d’une erreur)’ 관련 신청 역시 2023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CDJM, 2025b).

2. 매체 유형별 신청 현황(Les saisines par type de média)

모든 매체 유형에서 신청이 제기되고 있으나, 가장 많은 신청은 신문(Presse) 분야로 전체의 45.6%를 차지해, 전통 미디어가 여전히 윤리 문제의 주요 신청 대상임을 보여준다. TV 매체(Télévision)에 대한 신청이 두 번째로 많으며(28.4%), 라디오는 11.2%, 온라인매체(Média en ligne)는 9.3%를 차지하였다. 언론사와 연계된 소셜미디어(Réseaux sociaux liés à des médias) 및 팟캐스트 콘텐츠는 2.8%에 해당하며 통신사 등 기타 매체(1.9%)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매우 낮다(CDJM, 2025b).

그림 3 2024년 매체 유형별 신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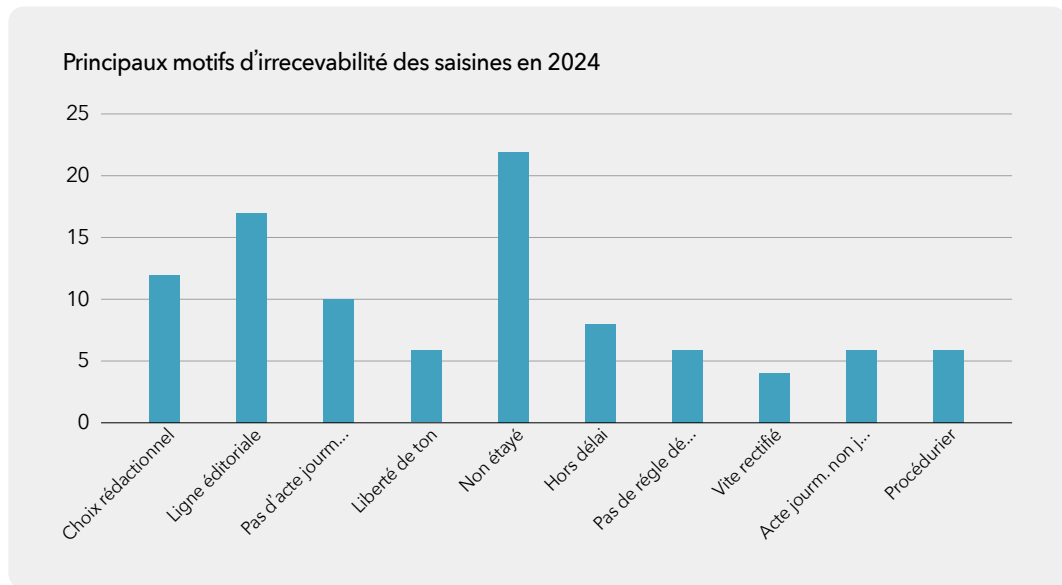
3. 접수 불가 신청(Les saisines non retenues) 현황

2024년 프랑스 언론윤리조정위원회의 접수 불가 신청을 사유별로 보면, 근거자료 미비(Non étayé)가 약 22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편집방침 관련(Ligne éditoriale)이 약 17건, 편집진의 편집상 선택(Choix rédactionnel)이 약 12건으로 집계된다. 저널리즘 행위가 아닌 경우(Pas d’acte journalistique)가 약 10건, 기한 경과(Hors délai)는 약 8건이다. 표현방식의 자유(Liberté de ton), 윤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Pas de règle déontologique), 저널리즘 행위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Acte journalistique non caractérisé), 절차적 문제(Procédurier)는 각각 약 6건이며, 즉시 정정된 경우(Vite rectifiée)가 약 4건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저널리즘 행위가 아닌 경우(Pas d'acte journalistique)와 저널리즘 행위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Acte journalistique non caractérisé)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저널리즘 행위가 아닌 경우(Pas d'acte journalistique)는 해당 행위가 원칙적으로 언론 활동의 범주에 속하지 않아 저널리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저널리즘 행위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Acte journalistique non caractérisé)는 본래 언론 활동의 범주에는 속할 수 있지만, 구체적 사안에 대한 심사에서 '저널리즘 행위'로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보도·기사의 특정 행위를 명시하지 않고 일반적 가치평가나 불만을 제기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기사에서 프랑스의 기후변화 책임 부정, 오존층 구멍 관련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며 위원회에 신청을 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해당 신청인들이 기사 또는 기자의 구체적인 저널리즘 행위를 분명히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 평가와 불만만 제기했다고 보아, 이 경우 '저널리즘 행위로 특정되지 않는다(Acte journalistique non caractérisé)'는 이유로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CDJM, 2024a).

그림 4 2024년 접수 불가 신청의 사유별 현황



2024년에는 접수 불가 신청(saisines non recevables)의 비율이 증가했다. 이는 언론윤리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 건수가 늘어나면서 일부 신청 내용이 충분히 근거를 갖추지 못한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이다. 또한, 매체의 편집 자유(기사 작성 선택, 편집방향, 표현 방식 등)와 관련된 신청이 주요 수리불가 사유로 작용하였으며, 형식적 요건(기간, 익명, 변호사를 통한 접수 등)은 수리불가 사유 중에서는 소수에 해당한다.

신청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언론윤리조정위원회는 신청 건에 대해 사안별로 상세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언론윤리조정위원회는 월간 뉴스레터와 공식 SNS를 통해, 수리불가 신청 사례 중 일부를 공

Ⅳ 2025년 프랑스 언론윤리조정위원회의 최근 결정례

프랑스 언론윤리조정위원회는 결정된 의견서(avis)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⁹ 2025년 최근 결정례를 중심으로, 언론윤리조정위원회의 판단기준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의견의 직접 인용·출처가 표기되지 않은 기사에 대한 판단

“지역일간지 기사에서 ‘기후변화 쟁점 반영’에 관한 의견의 직접 인용·출처가 명확히 표기되지 않아 사실처럼 전달된 것은 정확성과 진실성 의무 위반이다.”

(1) 사건 개요

환경단체 아팡스 지역 SOS(SOS Pays de l’Apance) 대표 알렉상드르 르나이(Alexandre Renahy)는 2025년 4월 29일 지역 일간지인 오프마른 신문(Le Journal de la Haute-Marne)¹⁰에 게재된 “광역 지역계획(SRADDET)¹¹: 랑그르 지역(Pays de Langres)이 반발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보도 정보의 정확성 및 진실성 준수 윤리의무 위반을 이유로 언론윤리조정위원회에 신청을 제기하였다(CDJM, 2025g).

해당 기사는 그랑데스트(Grand Est) 지역 랑그르 광역협의체(Pôle d’équilibre territorial et rural, PETR) 의원 회의에서 논의된 광역 지역계획(SRADDET) 개정안, 특히 ‘토지 인공화’(artificialisation des sols) 조항에 대해 지역의원들이 보인 반응을 요약·보도한 것이다. 개정된 광역 지역계획에 따르면, 랑그르 지역은 인공화 가능 토지 허용치 20% 초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기사에서는 세 명의 지방의원의 발언이 인용되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의원의 발언은 모두 따옴표로 직접 인용되었고, 세 번째 의원의 발언에는 “도시계획 문서 내에서 기후변화 쟁점 반영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라는 평가와 “국립공원 관련 언급이 없다는 점이 이례적이고 문제적이다”라는 직접 평가가 혼합 인용 형태로 보도되었다.

환경단체 대표 르나이는 해당 기사에서 ‘기후변화 쟁점 반영이 의미가 없다’는 표현이 직접 인용이나 설명 없이 사실처럼 전달되었다고 비판하면서, 도시계획법(Code de l’urbanisme)은 기후변화 대응·자원 보존·온실가스 감축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며, 도시계획은 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⁹ <https://cdjm.org/decisions/> 참조

¹⁰ Le Journal de la Haute-Marne(JHM)은 프랑스 오프마른(Haute-Marne) 주에서 발행되는 대표적인 지역 일간 신문이다(https://en.wikipedia.org/wiki/Le_Journal_de_la_Haute-Marne 참조).

¹¹ SradDET는 Schéma régional d’aménagement, de développement durable et d’égalité des territoires”의 약어, 즉 ‘지역개발·지속가능발전·영토균형을 위한 지역계획’을 말한다.

도시계획은 국가 저탄소 전략 등 기후정책 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일간지 오토마른 신문사는 별도의 답변 없이 기자가 회의 발언을 요약했을 뿐이라며 조정을 거부하였다.

(2) 언론윤리조정위원회의 판단

환경단체 대표 르나이는, 기사에서 ‘도시계획 문서에서 기후변화 쟁점 반영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지역위원의 견해가 따옴표나 명확한 출처 없이 삽입되어 기사 작성자의 일반적 진술처럼 제시되었다며 정확성·진실성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언론윤리조정위원회는, 해당 기사 내 의견·해석·평가와 직접 인용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기자의 판단이 아닌 객관적 인용임을 전달하려면 따옴표, ‘그에 따르면’ 등 출처를 분명히 표기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논쟁적·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기자가 사실확인 또는 상반된 관점 제시, 비판적 설명 등 해설을 덧붙이지 않으면, 대중에게 부정확한 정보가 유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기사 작성 중 작은 구두점 오류나 출처 명시 소홀이라 해도, 결과적으로 독자가 보도정보의 정확성·진실성에 관해 오인할 수 있으므로 언론의 책임과 윤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언론윤리조정위원회는 2025년 7월 22일 오토마른 신문의 랑그르 지역위원 회의 관련 기사에 대해, 정확성과 진실성 의무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인용의견(fondée)), 해당 의견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2. 공영라디오 방송 정치시사프로그램 인터뷰 중 발언 및 논평에 대한 판단

“정치시사프로그램 방송에서 논설위원의 유로·유럽통합 관련 소수 의견 배제 발언이 사실처럼 소개된 것은 정확성과 진실성 위반이다.”

(1) 사건 개요

2025년 5월 25일, 빠트릭 들라뜨르(Patrick Delattre)는 프랑스 공영라디오 France Inter의 ‘Questions politiques’¹² 프로그램에서 Le Monde 논설위원 프랑스와즈 프레소즈(Françoise Fressoz)가 “공통 화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및 “유럽통합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다”고 발언한 사실에 대해, 해당 발언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기자나 출연자 모두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론윤리조정위원회에 신청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수리여부(recevabilité)가 문제되었는데, 해당 방송은 정치인 및 저자 인터뷰로 구성되며, 진행자 카린 베카르(Carine Bécard)와 기자 프랑스와즈 프레소즈(Françoise Fressoz), 나탈리 생크리크(Nathalie Saint-Cricq) 모두 기자 자격으로 방송에 참여하였으므로 언론윤리조정위원회 심사 대상이 되며, 언론

¹² Questions politiques는 프랑스 대표 시사 라디오 방송인 France Inter에서 매주 일요일 12시 5분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정치·사회 분야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이다. <https://www.france.tv/franceinfo/questions-politiques/>

행위 책임자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CDJM, 2025h).

‘Questions politiques’는 France Inter, Franceinfo, 그리고 Le Monde 협력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이며, 문제된 방송에서 소메(Somme) 지역 생태·사회당(Écologiste et Social de la Somme)¹³의 국회의원 프랑수와 뤼팽(François Ruffin)이 3명의 기자(France Inter의 카린 베카르, France Télévisions의 나탈리 생그리크, Le Monde의 프랑스와즈 프레소즈) 질의에 응답했다. 마지막 코너엔 『프랑스 민주주의 실현(Faire de la France une démocratie)』 저자 라파엘 도안(Raphaël Doan)이 출연해 국민투표 제도 확대를 주장하며,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 및 2005년 유럽 헌법 조약에 관한 국민투표 사례가 주요 논점으로 다루어졌다. 이때 논설위원 프레소즈(Fressoz)는, 과거 국민투표 토론에서 반대 진영이 매우 활발하게 의견을 표명했으나, 현재에도 단일통화(유로)나 유럽통합 자체를 문제 삼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유럽 주권 재논의, 공익과 토론의 관계 등도 언급하면서 이러한 사안에 관한 토론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2) 언론윤리조정위원회의 판단

들라뜨르(Delattre)는 France Inter 방송에서 프랑스와즈 프레소즈 논설위원이 “단일통화(유로)를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와 “유럽통합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다”고 발언한 것이 부정확하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여러 정치단체와 적지 않은 국민이 EU 및 유로화 탈퇴를 원한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언론윤리조정위원회는 기자가 사실 전달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 견해, 가치판단, 신념이나 해석을 명확히 드러내어 독자·청중에게 영향을 주고자 하는 보도 형식인 “오피니언 저널리즘(journalisme d’opinion)”이라 해도 사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위원회는 논설위원 프레소즈의 발언에 대해, 주요 정당이 공식적으로 탈퇴를 주장하지 않게 된 변화는 맞지만, 극우·극좌 등 일부 정치단체와 상당수 시민이 여전히 EU·유로화 탈퇴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특히 해당 발언이 소수의견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정보와 논평의 구분 없이 인터뷰 대상자에게 사실로 제시된 채로 질문에 사용되어, 방송 진행자 누구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France Inter 방송이 정확성과 진실성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fondée)하였으며, 해당 의견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3. 온라인 매체의 기사 제목과 기사내용이 명백히 모순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사 제목에서 **체장암 발병 원인을 밝혀졌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으나, 본문에서는 원인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밝혀 제목과 내용이 명백히 모순된 경우 정보의 정확성과 진실성 의무 위반이다.”

¹³ Écologiste et Social de la Somme는 2024년 이후 프랑수와 뤼팽(François Ruffin) 의원이 소속된 프랑스 국회 내 정당의 공식 명칭이다.

(1) 사건 개요

2025년 5월 31일, 장-필립 페리에(Jean-Philippe Ferrier)는 온라인 매체 Pleine Vie¹⁴의 채식암 발병 원인 관련 기사 제목이 실제 기사 본문과 달리, 원인이 밝혀졌다고 단정적으로 서술하여 정보의 정확성과 진실성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며 언론윤리조정위원회에 신청을 제기하였다. 해당 기사는 프랑스 내 채식암 환자 수 증가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해 Le Parisien 보도 및 Acobiom 공식자료를 인용하여 분석하며, 실제로는 환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다. 기사에는 의료계가 추정하는 다양한 위험요인(가설)과 통계자료가 소개되며, 결론에서는 채식암의 치명성과 원인 불확실성을 재확인하였다(CDJM, 2025i).

(2) 언론윤리조정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은 Pleine Vie의 채식암 기사가 클릭을 유도하는 과장·선정적 제목(putaclic)의 대표 사례라고 비판하였다. 특히 신청인은 기사 제목에서 '발병 원인이 밝혀졌다'고 단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실제 기사 본문에서는 프랑스 내 채식암 환자 수 급증 원인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전문의 소견과 통계자료 역시 결정적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언론윤리조정위원회는 기사 제목의 두 부분 중 첫 번째는 본문 내용과 직접적으로 모순되고, 두 번째 "연구진이 명확히 결론내렸다"도 역시 앞선 제목과 심표로 연결되어 독자가 원인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혼동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실제로 기사 내에서 어떠한 위험요인도 확실한 원인으로 판명된 바 없으며, 기자 역시 이에 대한 별도 논평이나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제목의 단정적 표현만으로 독자의 오해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보았다. 언론윤리조정위원회는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식암 발병 관련 기사에 대해, 정확성과 진실성 의무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인용의견(fondée)), 해당 의견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4. AI 생성 이미지가 사진으로 오인될 수 있는 기사에 대한 판단

“AI 생성 이미지가 사진으로 오인될 수 있고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아 독자를 혼란시킬 수 있는 경우 정확성과 진실성 의무 위반이지만, AI 생성 이미지가 화난 모습의 표현이라는 이유로는 굴욕·비인도적 묘사에 해당하지 않아 인간 존엄성 침해는 아니다.”

(1) 사건 개요

베르나르드 파이제(Bernard Paysé)는 2025년 3월 1일 Jeuxvideo.com¹⁵에 게시된 “Z세대 청년들은 스티브 잡스를 미치게 만들 것이다: 그들은 출근 시 10분 늦는 것을 시간 엄수의 증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기사에 대해 언론윤리조정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다.

14 Pleine Vie는 프랑스에서 발행되는 시니어 및 실버라이프 중심의 대중 매거진 겸 온라인 미디어로, 건강, 의료, 생활, 사회 이슈 등 중장년층 독자 대상 정보를 폭넓게 제공한다.

15 Jeuxvideo.com(JV)는 프랑스어권 최대의 게임 전문 정보·커뮤니티 사이트이다.

파이제는 해당 기사에 사용된 AI 생성 이미지가 별도의 설명이나 식별표시 없이 현실적이고 모호하게 활용되어 정확성과 진실성 의무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이 이미지가 사망한 스티브 잡스의 화난 모습을 모욕적인(degradante) 방식으로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dignité humaine)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의 신청 이후 Jeuxvideo.com은 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기사 이미지에 'AI 생성 이미지' 표기를 추가하였다(CDJM, 2025d).

(2) 언론윤리조정위원회의 판단

언론윤리조정위원회는 Jeuxvideo.com에 게재된 기사가 미국 Fortune 보도("전체 청년 중 46%는 10분 지각을 지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Z세대 직원과 베이비붐 세대 경영진의 대립"을 개인화하고, "Z세대 청년들은 스티브 잡스를 미치게 만들 것이다"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보았다. 또한 위원회는 머리말과 주요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스티브 잡스의 시간 엄수 철학과 Z세대의 느슨한 시간 의식이 극명하게 대조되며 잡스가 살아 있었다면 젊은 세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견해, 잡스의 시간 관리 방식이 예외가 아니라 애플 경영의 핵심이라는 주장, 세대 간 시간 개념의 단절을 강조하는 내용이 4차례 반복되어 '세대별 시간 의식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기사 논지는 Fortune 설문을 바탕으로 스티브 잡스의 시간 엄수에 대한 철학을 Z세대와 비교하며, 변화된 직장문화가 기존 경영철학과 충돌한다는 점을 다층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1) 정확성 및 진실성 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은 "현실적이고 화난 표정으로 묘사된 AI 생성 이미지가 별도 식별 표시 없이 사용된 것은 허위정보(désinformation)에 해당하며, 명예훼손(diffamation) 또는 기억 침해로 볼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문제의 이미지는 '만평(press cartoon)이나 예술작품'이 아니고, 실제로 잡스의 얼굴을 재현한 사진 같아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며,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낮다는 점을 확인했다. 위원회의 통보 후 편집국이 이미지에 'AI 생성 이미지' 표기를 추가했지만, 단순한 표기·설명만으로는 정보의 진위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위원회는 지적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언론사가 정확성 원칙에 따라 실제 사진 활용을 우선하고, 독자를 혼란시키거나 허위로 인식될 수 있는 AI 생성 이미지의 사용을 지양해야 하므로 이 사건은 정확성과 진실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인간 존엄성 준수 위반 여부

신청인은 AI 생성 이미지가 분노·모욕적으로 묘사되어 인간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잡스를 화난 모습으로 표현한 것만으로는 존엄성 침해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이미지는 고통, 노예화, 인격 훼손, 굴욕적·비인도적 피해 등으로 변형된 이미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인간의 존엄성 침해 신청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정확성·진실성 의무는 위반했으나, 인간 존엄성 보호 의무는 위반이 없다고 보아 해당 사건은 일부 인용(partiellement fondée) 되었으며, 이 결정은 19대 6의 투표로 의결되었다.

5. NGO ‘레드 리스트’ 발표 보도에 대한 반론권 보장에 대한 판단

“해양보호 NGO단체가 작성한 레드 리스트 관련 비판이 정확히 인용되고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를 유발하지는 않았으나, 기사 작성 과정에서 Bloom 측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아 반론권 보장 의무를 위반하였다.”

(1) 사건 개요

2025년 4월 10일, NGO Bloom 협회 법률책임자 아예메릭 티요에 듀 블라이(Aymeric Thillaye du Boullay)는 전문 뉴스 사이트 Le Marin에 실린 4월 3일자 기사와 관련해 언론윤리조정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였다. Le Marin에 게재된 기사제목은 “이제 도가 지나쳤다, 이 집요한 공격은 그만해야 한다! Bloom 협회의 비판에 맞서, 어업인들은 한계에 몰렸다”였다. 문제가 된 Le Marin 기사(해양 경제 전문지, Ouest-France 그룹)는 이미 해양보호구역 내 해저를 파괴한다고 판단된 어선 4,500척의 ‘레드 리스트(liste rouge)¹⁶’ 발표 등 Bloom 협회 관련 이슈를 여러 차례 다룬 바 있다. 이번 기사(“이제 도가 지나쳤다, 이 집요한 공격은 그만해야 한다!”)는 머리말에서 “피해 어업인 전체가 반발하며 표적이 된 어업인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에서는 레드 리스트에 포함된 두 명의 어선주가 분노와 부당함을 토로하고, Bloom 협회가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하며 위험한 생태주의적 극단주의를 보인다고 비판하는 증언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들은 Bloom 협회가 현실성 없는 전면적 어업 금지를 의도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사 말미에는 해양부 장관 및 지역 해양수산업 위원회가 해당 명단 공개 방식을 사회적 매장이라 비판하고, Bloom 협회의 공격이 매우 충격적임을 공식적으로 지적한 성명이 덧붙여져 있었다.

Bloom 협회는 기사에 대하여 정확성 및 진실성 준수 의무 위반과 반론권 미제공을 주장했으며, Bloom 협회 소속 인물의 충격적인 발언 등이 무분별하게 보도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절한 조정 없이 실렸다고 주장하였다(CDJM, 2025e).

(2) 언론윤리조정위원회의 판단

1) 정확성 의무 위반 여부

언론윤리조정위원회는 기사 내 Bloom 협회 관련 비판 및 논란, 특히 검증 불가능한 정보의 반복적 인용, 어업인의 SNS상 피해 진술, Bloom 협회의 관련성 부각 등에 대해 모든 인용문이 인터뷰 대상자의 직접 발언임이 따옴표와 “그들에 따르면(selon eux)” 등으로 명확히 구분돼 있고, 기사 목적이 Bloom 협회의 ‘레드 리스트’에 실린 어선 소유주 어업인의 입장을 소개하는 데 있음을 인정했다.

¹⁶ 레드 리스트(liste rouge)란 NGO Bloom 등이 해양보호구역 및 국제 해역에서 ‘파괴적 어업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 어선·업체·개체 등의 명단을 말한다(<https://bloomassociation.org/avis-aux-supermarches-bloom-publie-la-liste-rouge-des-navires-destructeurs/> 참조).

위원회는 Bloom 협회가 소셜미디어상 발언을 명확히 비난하고, 해당 활동가와 Bloom 협회의 실질적 관계가 없다는 Bloom 측 견해도 함께 반영됐음을 확인했다. 기사에는 Bloom 협회가 비판적 활동가 간 인과관계나 책임을 직접적으로 단정하는 표현이 없고, 기자는 단순히 어업인의 입장·경험, 사회적 긴장 상황 등 사실적 내용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 보도는 신원이 확인된 당사자의 ‘의견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고, 제공된 인용에 사실적 부정확성이나 허위사실 적시가 없으며, 언론의 사실 보도 및 자유로운 의견 전달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2) 반론권 보장 여부

언론윤리조정위원회는 Le Marin의 기사에서 반론권 보장과 관련하여, 기사 작성 과정에서 Bloom 협회에 사전 질의나 공식 의견 청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Bloom 협회의 입장과 반론 역시 기사 내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Bloom 협회 관련 온라인 메시지 등도 당사자의 소명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되었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기사가 Bloom 협회 측에 ‘레드 리스트’ 선정 방식이나 비판에 대해 답변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반론권 미보장의 일방적 보도 방식은 독자에게 공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다. Bloom 협회가 Le Marin을 통해 별도 보도자료를 이용해 입장을 밝힐 기회를 가졌다고 해도, 이 기사에서 반론권(offre de réplique)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Le Marin이 정확성 및 진실성 준수 의무는 이행했으나, 반론권 보장 의무는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신청을 일부 인용(partiellement fondée)하였고, 이 결정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6. 문학적 해석과 저자의 관점을 밝힌 기사에 대한 판단

“기사가 소설을 대상으로 한 문학비평으로서, 기사 전반에 걸쳐 문학적 해석과 저자의 관점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기사 구조·어휘·편집 분류 등에서도 허위 사실이나 독자 기만의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정확성·진실성·공정성 의무 위반이나 불공정한 방법 사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사건 개요

2025년 4월 13일, 클라라 그리말디(Clara Grimaldi)는 Paris Match 웹사이트에 게시된 “조니 뎀(Johnny Depp)과 앰버 허드(Amber Hear): 커플의 자기파괴에 대한 심층 탐구”라는 기사를 대상으로 언론윤리조정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해당 기사가 소설 또는 저자 개인 해석(토론토, 엘리자베스 브누아(Élisabeth Benoît) 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에도 문학적 서사(소설 또는 저자 해석)와 객관적 사실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합되어, 독자가 저자의 해석·주장을 사실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정확성·진실성 위반, 반론권 미보장, 정보 수집 절차의 비윤리적 문제를 제기하였다(CDJM, 2025f).

(2) 언론윤리조정위원회의 판단

문제가 된 기사는 Paris Match의 마리-로르 들로르르(Marie-Laure Delorme) 기자가 퀘벡 소설가 엘리자벳 브누아(Élisabeth Benoit)의 작품 『토론토(Toronto)』를 평론한 글로, 해당 소설은 조니 뎀과 엠버 허드 간 분쟁과 양 진영의 온라인 갈등, 엠버 허드에 대한 극심한 사이버 괴롭힘 등을 배경으로 한다. 기사는 ‘서적(Livres)’ 및 ‘문화(Culture)’ 섹션에 문학비평이라고 명확히 표시되어 있으며, 여러 차례 작가·작품 중심의 서술이라고 명시하고, 작가는 두 배우의 법적 분쟁에 대해 자신의 소설적 해석과 관점을 중심으로, 특히 SNS상 양 진영의 대립과 작가가 남성 스타(조니 뎀) 편을 드는 시각을 드러냈다.

1) 정확성 및 진실성 의무 여부

신청인은 조니 뎀 손가락 부상에 대해 엠버 허드의 책임이라고 묘사한 구절이 실제로는 명확히 입증된 사실이 아님에도 언급된 정보를 누락하여 독자가 오인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언론윤리조정위원회는 본문 구성이 소설가의 관점 반영이며 기자가 해당 주장에 동의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엠버 허드가 모든 단계에서 거짓말을 하고 조작한다” 등 중대한 비난 구절에 대해, 신청인은 재판 과정에서 증언과 사진 증거가 있으며 이것은 일방적 단정 표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원회는 이것은 비평 대상인 문학작품 저자의 시각이라는 점, 단정의 주체를 소설가로 명확히 구분한 점을 들어 신청을 기각했다. ‘유죄(coupable)’라는 용어가 민사 분야에 부적절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프랑스·미국 명예훼손 소송에서 해당 용어가 관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정확성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위원회는 해당 기사 내 모든 문제제기(정확성·진실성, 사실·소설 구분, 법적 용어 사용)는 문학비평 및 문학적 해석임을 밝힌 맥락과 기사 편집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확성과 진실성이 준수되었으므로 해당 신청 사유는 기각(non fondée)하였다.

2) 반론권 보장 여부

신청인이 엠버 허드에게 유리한 증거와 다양한 해명자료, 2020년 영국 판결 등 반론적 정보가 기사에 전혀 소개되지 않아 공정성·객관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언론윤리조정위원회는 이 기사가 사실보도가 아닌 문학비평에 해당하며, 기사 작성자는 소설가가 조니 뎀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 이는 평론의 성격상 허용되는 관점의 제시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언론윤리조정위원회는 엠버 허드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나 영국 재판 결과 등이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공정성 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언론 보도라기보다 문학적·비평적 논평의 영역에 속하므로, 반론권 보장이나 균형적 사실 제시 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3) 정보수집 과정에서 불공정한 방법 사용 여부

언론윤리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기한 “기자가 소설적 서사와 사실 보도의 구분 없이 기사를 구성하여 독자를 기만했다”는 주장을 검토한 결과, 해당 기사가 문학 비평임을 독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편집·서술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자는 평론적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소설가의 관점과 자신의 비평적 입장을 함께 드러냈으며, 문학적 글쓰기 방식, 비평적 어휘 사용, 기사 편집 구조와 지면 분류 등에서도 허위 사실이나 의도적 은폐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보 수집 과정에서 불공정한 방법이 사

용되었거나 독자를 기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언론윤리조정위원회는 본 사안을 심의한 결과, 보도의 정확성과 진실 준수, 반론 기회의 보장 등 언론 윤리적 의무가 지켜졌으며 불공정한 방법 역시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신청은 기각(non fondée) 되었으며, 이 의견은 전원일치로 채택되었다.

V 시사점

프랑스 언론윤리조정위원회는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는 동시에 언론윤리 위반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는 독립적 기구로 기능한다. 동 위원회는 유럽연합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미디어 신뢰 회복과 저널리즘 윤리 확산을 도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확산된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 허위정보 및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의 윤리적 관리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2024년 연간보고서는 언론윤리 준수가 민주주의 실현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총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50% 증가하였으며, 이는 언론윤리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 증대를 시사한다. 접수된 신청의 다수는 보도의 정확성 및 진실성과 관련되었으며, 그와 더불어 반론권 보장 의무 위반, 인간 존엄성 침해 문제가 빈번히 지적되었다. 또한 전통 매체인 신문과 텔레비전에 대한 신청 비중이 여전히 높으나, 온라인 매체 및 소셜미디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접수 불가 신청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근거 자료 부족과 편집 방향 및 선택과 관련된 신청이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진지한 신청과 절차적 요건 충족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2025년 프랑스 언론윤리조정위원회의 결정례는 언론윤리의 구체적 준수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언론은 모든 보도에서 정확성과 진실성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인용된 의견과 사실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객관적 사실과 기자의 해석을 엄격히 구분하여야 한다. 둘째, 소수의견은 배제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아니 되며 다양한 관점이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기사 제목과 본문의 불일치는 독자의 오인을 초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넷째, AI 및 디지털 콘텐츠 활용 시에는 사실과의 혼동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식별 조치와 더불어 인간 존엄성 및 정보의 정확성 보장이 필수적이다. 다섯째, 보도 과정 전반에서 반론권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공정성 원칙 확보의 핵심적 요소로 기능한다. 여섯째, 문학적 비평과 사실 보도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일곱째, 정보수집은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기만적 절차는 윤리적 정당성을 상실한다.

이처럼 프랑스 언론윤리조정위원회는 언론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과 건강한 공론장의 형성에 기여하는 핵심적 제도라 볼 수 있다. 나아가 위원회가 제시하는 결정례와 원칙은 언론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규범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첨부 1(Annexe 1) : 신청수리요건 분석표(신청기준표)
(Fiche d'analyse de la recevabilité des saisines)

| 신청번호(SAISINE N°) | | | | |
|--|---|------------|--------------|-------------------|
| 수리기준 CRITÈRES DE RECEVABILITÉ MANIFESTE) | | 예 (Oui) | 아니오 (Non) | 비고 (Remarques) |
| 신청권자 (Qualité et capacité des requérant.e.s) | 신분사항(Etat civil) | | | |
| | 16세 이상(Personnes physiques +16 ans) | | | |
| | 법인(Personnes morales) | | | |
| | 대리-변호사 대리 (Représentation : représentant légal- avocat) | | | |
| 기한(Délai) | 3개월 이하(≤ 3 mois) | | | |
| | 3개월 초과(> 3 mois) | | | |
| 신청목적(Objet de la demande) | 의견서 요구(Demande d'avis) | | | |
| | 조정 요구(Demande de médiation) | | | |
| 신청(Saisine.s) | 12개월 기간 내 신청건수 (Nombre de saisines sur une période de 12 mois) | | | |
| | 사건 신청접수 설명의 총 글자수(공백 포함) (Nombre de signes, espaces comprises, de la description de la saisine) | | | |
| CDJM의 관할권 Compétence du CDJM | 저널리즘 윤리 문제에 관한 사항(questions relatives à la déontologie journalistique) | | | |
| 행위의 성격 (Nature de l'acte) | 저널리즘 행위(Acte journalistique) | | | |
| | 프랑스 내 또는 프랑스 대중을 대상으로 한 공표·방송·온라인 게재 (Publication / diffusion / mise en ligne en France ou à destination du public français) | | | |
| | 편집방침/편집진의 편집상 선택 (Ligne éditoriale / choix éditoriaux de la rédaction) | | | |
| | 언론매체 전체 보도물/ 저널리즘 행위의 특정성(Ensemble de la production d'un média / Individualisation de l'acte journalistique) | | | |
| 신청 사유(Motivation de la saisine) | | | | |

2025

언론중재위원회 현안보고서 2

발행인 김성수
편집인 김윤정
기획 언론중재위원회 연구센터
발행일 2025년 10월 15일

언론중재위원회 연구센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1층
전화 (02) 397-3042
www.pac.or.kr

편집 문화공감
04619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4 보림빌딩 403, 302호
전화 (02) 2266-1897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